

#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65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3. 6.

김석한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3. 13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3. 25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김원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완화된 등록 기준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광객 이동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개선·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제2조 중 “20대” 를 “10대” 로 한다.

#### 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-7호

- 예고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12.(목)[6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#### 가. 개정이유

-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량 대수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,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며, 지역 내 자동차대여 서비스 운영 현 실정을 반영한 제도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량 대수를 현행 “20대 이상” 에서 “10대 이상” 으로 완화하려는 것임.

#### 다. 관련 법령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9조(등록기준)
-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(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)

#### 라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대수를 현행 20대 이상에서 10대이상으로 완화하여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,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현재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업체(영업소)는 6개소이며, 이 중 차량 대수 20대 미만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. 구체적으로 10~19대 3개 업체, 4~6대 3개 업체로 나타나 지역내 자동차대여 사업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-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, 현행 등록기준은 지역 사업 규모에 비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, 등록기준 완화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 등록기준 완화가 사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향후 사업자 증가 및 시장 여건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등록업체 관리와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마. 종합의견

-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,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운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,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3. 25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